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4. 8. 선고 2016고단28 판결 강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수 원 지 방 법 원 안 양 지 원

판 결

사건 2016고단28 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 체이용음란),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소지)

피고인 A

검사 송혜숙(기소), 김보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11.경 불상지에서 통신매체인 채팅 어플리케이션 'D'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야한 동영상을 보았냐", "너 밑에 털이 났느냐", !! 자위하냐", "보지에 손가락이 몇개 들어가냐"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통신 매체) 기재와 같이 2015. 7. 5.경부터 같은 해 12. 2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61명의 피해자들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하여 이를 도달하게 하였다.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2. 강요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 E(여, 15세)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대화 내용을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E로부터 속옷 착의 사진, 나체 사진을 전송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E 이름으로 만든 F 계정을 통하여 피해자 E의 친구들에게 대화를 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 E로 하여금 계속하여 피고인과 대화를 하게끔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전송과 성관계를 요구하고, 대화를 거부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사진, 자위행위 장면을 촬영하게 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강요) 기재와 같이 2015. 7. 5.경부터 같은 해 12.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명의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나체사진을 전송하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강요하였다.
-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5. 12. 26.경까지 서울 강남구 G, 3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인 USB 저장장치, 노트북에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청소년의 나체사진 및 청소년이 자위하는 동영상, 사진 파일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진술녹화), 속기록
- 1.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 1. 경찰 압수조서
- 1. 각 D 대화내용 및 사진 등, F 게시글 및 게시사진
-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4번 피해자 Q 전화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각 강요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음란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강요죄, 제1유형, 가중영역)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의 경합 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징역 10월~징역 4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D 메신저를 통하여 접근하여 판단능력이 미숙한 피해자들에게 나체사진 등을 체계적인 방법으로 요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나체사진 등을 받은 후에는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강제로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 변태적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을 찍어 보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강요죄의 피해자는 12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피해자는 61명에 이르는데, 피해자들은 대부분 10대 여학생들인 점, 피고인은 D 유령계정을 4개 개설하고, 인터넷싸이트를 통하여 대포폰 3대를 구입하고, 외부 와이파이를 이용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방법으로 계획적, 반복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하였으므로, 단순히 성적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자행한 일회성 범행과는 구별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에 있는 무선인터넷 공유기를 사용하여 동종 범행을 하다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그 후 반성하기는커녕 외부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등 수사망에서 빠져나갈 궁리를 하며 범행수법을 더욱 교묘하게 발전시킨 점,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은 제발 위 동영상 등을 유포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어린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음란행위를 할 것을 강요하였던 점, 위 범행으로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여야 할 나이인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분명한 점, 현재까지 어떤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손해배상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지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희진